

발전기금관리규정

최초제정일 : 2004. 9. 23.

최근개정일 : 2019. 9.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의 기금은 자산의 형태 또는 종류에 따라 현금 등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도서, 유물, 골동품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해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일컫는다.

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 및 집행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거나 특정 대학(원), 학부(과, 전공) 등 그 집행기관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수증물품: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 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역 등 교육용 물품을 기증한 물품
4. 부동산: 기부자가 교육용 또는 수익용으로 기증한 부동산

제2장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의 관리 및 조성계획
2.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
3.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4.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특정 용도를 지정한 기금을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
2.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가 장학기금일 경우
3. 지정발전기금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학부의

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4.12.)

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법인사무국장, 발전기금 기부자, 동문, 학부모, 발전기금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8.29.)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총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사용) ①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교의 교육연구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정 대학(원) 또는 학부(과, 전공)에 기부한 기금은 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대학(원) 또는 학부(과, 전공)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운용계획) 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반경비)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공헌자 인센티브는 교비로 충당하며 대학지원본부는 매년도 일정액의 제반경비를 책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12.)

제10조(공헌자 인센티브) 학교는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격려금, 인사고과 반영)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

1. 대상 : 본교 교직원 (신설 2019.09.19)

2. 지급액 : 총액 300만원 이상(1년간)이며, 발전기금 총액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목적성 지정기부금은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 유·무를 정한다.) (신설 2019.09.19)

3. 기금이 현물일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인센티브를 정한다. (신설 2019.09.19)

제11조(회계처리) ①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커뮤니케이션팀은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8.29)

제12조(기금관리운용의 감독 등) ①기금 및 수익금의 관리운용사용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커뮤니케이션팀은 기금에 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4.12., 2018.8.29)

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13조(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등) ①총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
2. 본교 주요 행사에의 초청
3. 기금출연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기념물의 설치
4. 기타 기금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등

②위원회는 제1항의 세부사항 이외의 예우를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예우내용을 제안서로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커뮤니케이션팀은 기부 내용과 정도에 따른 예우 내용 및 기금출연자의 기금 규모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예우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4.12., 2018.8.29)

제5장 주관부서

제14조(주관부서) 발전기금의 관리운영,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주관한다.(개정 2016.4.12., 2018.8.29)

제6장 보 칙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